

# 2018년 안성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## 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8. 2. 2. ~ 2. 9.(6일간)
- 감사분야 : 2015년 2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- 감사결과

감사결과			처분계획						
			행정상(건)		신분상(명)			재정상(천원)	
행정상	신분상	재정상(천원)	시정	주의	징계	경고	주의	회수	과태료
12건	11건(28명)	1건(4,000)	4	8	-	8	20	-	4,000

## II 주요 지적사항

### ○ (인사·행정) 전문교육 성적 평정 부적정 등

- (사이버교육 평정 부적정)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」 제11조(전문교육 평정) 제1항 제4호에 보면, 당해계급에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(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)은 과정당 0.25점으로 평정하되, 평정점은 0.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- 2017년 하반기 교육훈련성적평정 시 지방소방☆ 김○○, 조◎◎은 현계급 승진임용일이 2017.11.17.이고, 사이버청력 및 성희롱예방 사이버교육은 각각 2017.10.01. ~ 10.30.까지 이수한 것으로, 현계급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아니고 前 계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 성적을 현계급에도 평정하는 등 전문교육성적 평정 소홀.

【관련규정】 ·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(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)  
 · 같은 규칙 제11조(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)  
 ·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(전문교육 평정)

### ○ (예산·회계)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준수 미흡

- “사무관리비”는 무인경비, 전기안전관리대행,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(행사용역은 제외)에 대한 역무대가 및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, “공공운영비”는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통신료, 상하수도요금, 우편요금 등) 및 제세, 시설장비 유지비, 차량·선박비,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으로 사용, “정원가산업무추진비”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“동호인 취미클럽, 체육대회, 생일기념품, 불우공무원 지원”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등은 “사무관리비”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
- 2015년부터 2017년까지 “안성소방서 전기안전관리대행, 오수정화조 및 위생소독 용역” 건에 대하여 “공공운영비” 예산과목으로 9,180,000원을 집행하였으며,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“정원가산 업무추진비”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“사무관리비” 예산과목으로 516,000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집행함.

【관련규정】 · 지방재정법 제36조(예산의 편성) 및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외 예산이체)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(예산의 편성)  
 ·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안부 예규) 제3장(비목별 세부집행지침)

### ○ (재난대응·안전) 소방무선통신망(천덕산 기지국) 고장수리 미초치

-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유·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및 장비점검을 매일 2회(08:30~09:30, 17:30~18:30) 실시하고,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,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·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,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·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등을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
- 상황실 근무자 지방소방△ ○○○ 등 3명, 소방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지방소방△ ○○○ 등 2명은 2016.4.20.일 천덕산 무선기지국 전원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 사항을 발견하고도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에 천덕산 기지국(UHF 1기, VHF 1기) 전원 불량 사항을 고장발생 이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2018.2.6.(화) 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.

【관련규정】 ·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8조(일일점검)

□ (예방·민원)

①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적격자 선임

- 제4류 위험물(제1석유류 포함)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, 지정수량 5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 및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, A 업체 등 2개소는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를 포함하여 지정수량 5배 이상 저장함에도 불구하고,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자로 선임.

【관련규정】 ·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(위험물안전관리자)  
· 같은법 시행령 제13조(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)

②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2회 미준수 대상 과태료 미부과

-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·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, B 공장 등 4개소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 되고 1년 미경과 후 2회에 걸쳐 조치명령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미부과.

【관련규정】 ·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수범사례 1 **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확충**

- 최근 반복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활동 등 부실대응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물품구매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.

**문제점**

- 촌각을 다투는 재난현장에서 관창과 도끼를 동시에 휴대하기 곤란
- 비상탈출·수관 끌어올리기·퇴로 확보 등 개인로프가 현장활동시 반드시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으로 개인 지급이 어려운 실정
- 겨울철 노후 관창 사용으로 소화수가 흘러 빙판 안전사고 우려와 현장대응력 저하

**중점 추진사항**

- 개인용 도끼걸이 구매하여 파괴 장비 상시 휴대하여 재난 총력 대응  
- '18.1.26. 199명 중 경방 75명 지급 ※ 개당 3,850원으로 경기소방 구매 확대필요
- 개인 로프백 가방(로프 20m 포함)  
- 안성시청과 협업하여 재난대응활동예산으로 40개 구매 예정('18. 3월 중)
- '18.2.6 피스톨 관창 24점 부품교환 등 수리 조치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  
- 신제품 구매 대비 예산절감 4,790,000원



도끼걸이

개인 로프백

관창성능 개선

**추진배경**

- 소방공무원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직원간 상호소통과 공감대 형성
- 의용소방대원, 시민에게 소방조직 문화의 이미지 제고

**추진방법**

- 현장활동, 간담회, 행사 등 종료 후 인화하여 카드식 봉투에 담아 전달
- 카드식봉투에 「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」 홍보 문구 삽입 제작



**중점 추진사항**

- 현장활동, 행사, 간담회, 축제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직원과 의용소방대원, 시민들의 활동상을 사진에 담아 인화하여 카드식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
  - 추진기간 : 2017.06.29. ~ 지속추진 중
  - 소요경비 : 금1,500천원(사무관리비) \* 2,000매
  - '17년 추진실적 : 현장활동, 소방의날 행사, 바우덕이 축제, 청렴유적지 방문체험, 관서방문, 체육대회, 각종 시상식 등



**기대효과**

-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고취 및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마련
- 의용소방대원 및 시민에게 기억에 남는 소방조직 이미지 형성